

제10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26. 9. 29.)

긴급현안질문 답변자료

박란희 의원

- (질문제목) 금강수목원 재개장 협약에서 미흡했던 ‘소통과 협치’
- (질문방식) 일괄질문 일괄답변
- (답 변 자) 행정부시장
- (답 변 석) 중앙발언대

긴급현안질문 목록

제 목	쪽수
금강수목원 재개장 협약에서 미흡했던 ‘소통과 협치’	
1. 금강수목원 재개장 및 공동운영 추진 경위	1
2. 시의회 사전보고 및 협의 여부	8
3. 시의회 의결 필요성에 대한 법률 검토 여부	9
4. 공동운영의 법적·행정적 성격	11
5. 세종시의 운영비 부담 규모와 산정 근거	13
6. 인력 투입과 조직 운영 계획	15
7. 운영수입 배분 및 세종시민 편익 분석	18
8. 시설관리 및 안전사고 책임 주체	20
9. 세부운영협약과 관련한 의회 협의계획	21
10. 향후 유사 협약 관련 소통 및 협치 강화방안	22

1. 금강수목원 재개장 및 공동운영 추진 경위

산림자원과장 이용우(4410) 가로수팀장 김미나(4441)

- '25년 6월 금강수목원 운영 중단 이후, 시민들의 재개장 요구와 공공적 활용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금강수목원 등은 행정구역상 세종시에 위치하나, 시설 및 토지의 소유·관리 주체가 충청남도로, 시설의 안정적 활용을 위해서는 양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인 구조임
 - 이러한 상황에서 2026년 7월 말 충청남도가 시에 공동운영을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양 기관 간 실무협의를 진행하였음
- 이후 협의 과정에서 운영비·인력 분담비율, 수입금 배분 등 세부사항을 조율하였으며, 시민들에게 산림휴양 공간을 조속히 제공하기 위해 추석 명절 전 금강수목원을 우선 무료 임시개방하고자 '26년 9월 16일에 공동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음
 - 현재는 협약의 주요 내용과 재정적 부담 등에 대해 의회 의결 절차를 선행한 후 충청남도과 협약을 재체결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정비하고 있음

※ 그간 추진현황

- ('25.6.30) 자연휴양림 등록 취소 및 수목원 폐원·등록말소
- ('25.8.~'26.5.) 국정기획위원회, 기재부, 산림청에 국가자산화 건의(8회)
 - ※ 시·충남도가 협력하여 국가자산화를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불가 의견 표명
- ('26.3.~'26.5) 충청남도 매각 입찰 공고 유찰(4회)
- ('26.7.) 금강수목원 등 민간매각 중지
- ('26.7.28) 공동운영(시↔충남도) 제안 협의
- ('26.8.3~8.5) 공동운영 분담내역 시장님 보고 및 충남도에 시 의견 전달
- ('26.8.5~9.7) 공동운영 분담내역 양 기관 협의 및 협약식 일정 조율
- ('26.9.10) 공동운영 업무 협약 내용 최종 협의
- ('26.9.16) 공동운영 업무 협약 체결

금강수목원 등 재개장 및 공동운영을 위한

업 무 협 약 서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와 세종특별자치시(이하“시”라 한다)는 금강수목원 등의 원활한 재개장과 공동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금강수목원·자연휴양림 등의 안정적인 공동운영에 필요한 도와 시의 역할 및 협력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동운영 기본원칙】 도와 시는 금강수목원 등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협력한다.

1. 운영인력

- 가. 도와 시는 금강수목원 등의 안정적인 공동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상호 협력하여 지원한다
- 나. 운영인력의 규모, 직급·직렬, 근무형태 및 기관별 업무분장 등 세부사항은 운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양 기관이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2. 운영비 및 시설비

- 가. 도와 시는 금강수목원 등의 공동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는 사전 협의한 사항을 따른다.
- 나. 기반시설 정비 및 시설개선 등에 필요한 시설비는 시설 소유·관리주체인 도가 부담한다.

제3조 【운영수입 및 정산】 공동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운영수입은 양 기관의 공동운영 참여 및 분담사항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4조 【재개장 관련 행정절차】 도는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변경승인 등 재개장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시는 각종 인허가 승인권자로서 행정절차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제5조 【협약의 변경】 본 협약의 내용 또는 금강수목원 등의 활용방향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제6조 【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양 기관의 장이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기관 간 이의가 없는 한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7조 【협약의 준수】 본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서명한 협약서를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9월 16일



충 청 남 도 지 사
박 수 현



세 종 특 별 자 치 시 장
조 상 호

참고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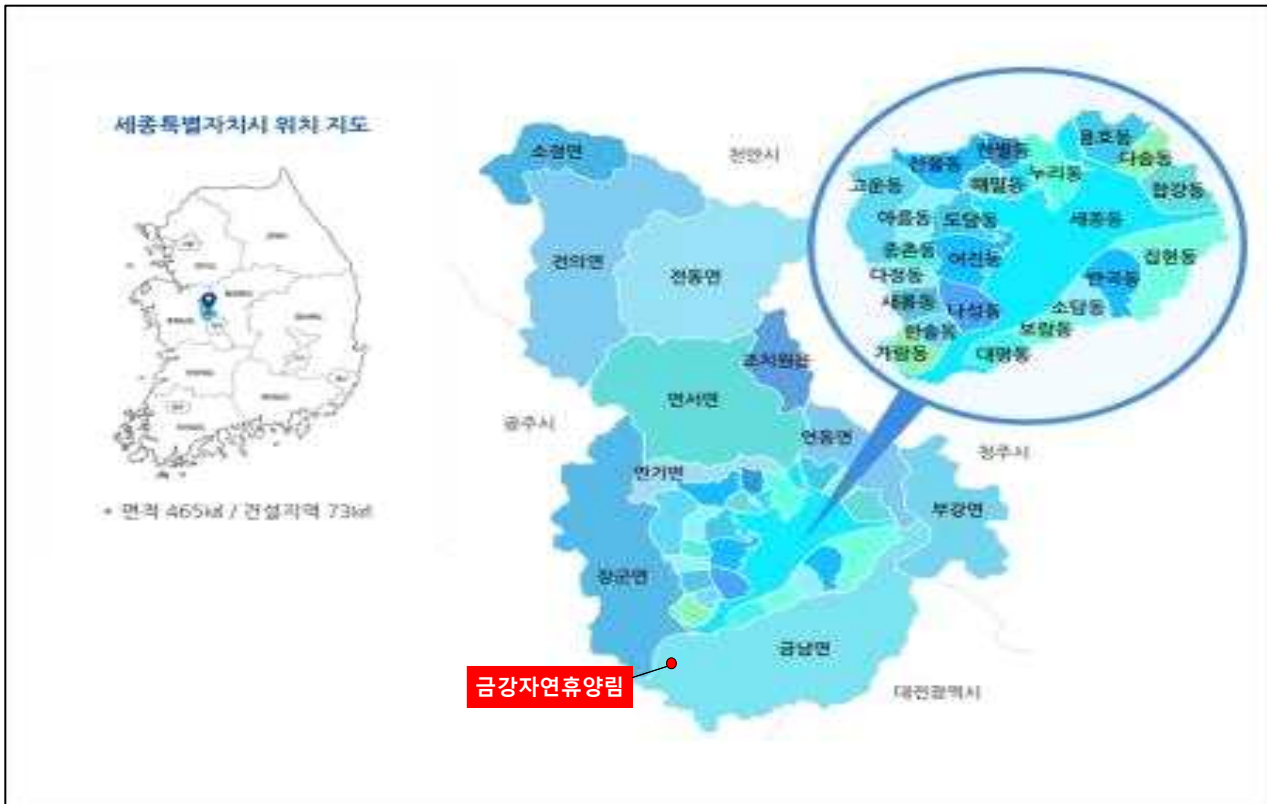
충청남도 금강수목원 등 기본현황

구 분	금강휴양림	금강수목원		
위 치	세종시 금남면 산림박물관길 110	세종시 금남면 도남리 5-3		
지정일자	1993년 3월 29일	2004년 2월 9일		
면 적	184ha('07.7.5. 변경지정)	61.5ha		
조성기간	1994년('94 조성, '95~'14 보완)	1992~1994년		
투 자 액	9,086백만원	10,900백만원		
주요시설	편의시설(숲속의집, 등산로, 산책로 등) 위생시설(취사장, 음수대, 샤워장 등) 체육시설(어린이놀이터 등)	수목원(3,661종, 336,093본) 온실(523종, 25,974본) 종 보존원(859종, 11,658본)		
방문객수	※ 연간 평균 약 200,000명 방문			
	구 분	방문객 수(명)		
		합계	유료	무료
	2022년	200,000	80,000	120,000
	2023년	220,000	80,000	140,000
	2024년	230,000	80,000	150,000

참고3

금강수목원 등 위치도 및 현황도

【위치도】



【현황도】



참고4

금강수목원 등 시설이용 금액 현황

□ 입장료 · 주차료 징수기준

(단위 : 원)

구분	입장료			주차료				
현행 조례 기준	일반인	청소년	어린이	경형자동차	소·중 친환경자동차	소·중 자동차	대형 친환경자동차	대형
	1,500	1,300	700	1,500	1,500	3,000	2,500	5,000

□ 숙박시설 징수기준

(단위 : 원)

숙박시설(숲속의집·야영장·캐빈하우스)											
요금	3인실 이하	4~5 인실	6~7 인실	8~9 인실	10~11 인실	12인실 이상	데크 4인	블럭 4인	트레일러 4인	캐빈 4인	카라반 4인
성수기 (주말)	65,000	106,000	134,000	173,000	208,000	240,000	25,000	30,000	45,000	55,000	55,000
비수기 (주중)	39,000	58,000	75,000	98,000	124,000	163,000	20,000	25,000	35,000	45,000	45,000

□ 회의장 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사용기준	요 금	비 고
35인 이하	4시간 미만	80,000	※ 충청남도 및 그 소속기관이 공무로 사용 시 이용료 면제

※ 숲속의 집 현황(25년 기준)

(단위 : 호)

구분	합계	16㎡ (5평)	23㎡ (7평)	33㎡ (10평)	36~43㎡ 4인(11~13평)	49~58㎡ 6인(15~16평)	59~63㎡ 8인(18~19평)	79㎡ 12인(24평)	99~149㎡ 30인(30~45평)
금강	18	-	-	-	10	4	1	2	1

2. 시의회 사전보고 및 협의 여부

산림자원과장 이용우(4410) 가로수팀장 김미나(4441)

- 충청남도과 실무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협약식 일정을 우선하여 추진하면서 관련 절차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시의회 사전보고·협의를 진행하지 못하였음
- 향후에는 주요 정책 및 협약 추진 시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른 의회 절차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시의회와 충분히 소통한 후 추진하겠음
- 앞으로 주요 진행 상황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충청남도과 재협의를 통해 협약 내용 및 절차를 보완하겠음

3. 시의회 의결 필요성에 대한 법률 검토 여부

산림자원과장 이용우(4410) 가로수팀장 김미나(4441)

- ☐ 추석 명절 전에 업무협약 체결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조속히 휴양 시설을 제공하고자 실무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 협약 체결에 따른 시의회 의결 필요 여부에 대한 검토가 사전에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 ☐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서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 등을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바,
 - 본 협약의 내용 및 이에 따른 세종시의 의무부담이 지방의회 의결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협약 체결 전에 법률적·행정적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하나, 이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 이는 협약 체결을 서두르는 과정에서 의회 의결 필요 여부에 대한 사전 법률검토가 미흡해서 절차상 미비사항임
- ☐ 아울러, 본 건은 「세종특별자치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9조의 규정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추진된 사항으로,
 - 향후 유사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협약 내용에 따른 재정적·비재정적 의무부담 여부 및 관련 법령·조례에 따른 의회 의결 필요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한 후 추진하겠음

※ 세종특별자치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 제6조(사업)시장은 산림문화·휴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산림문화·휴양 관련 조사 및 연구
 - 2. 산림문화·휴양시설 조성 및 정비
 - 3. 산림문화·휴양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 4.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관리
 - 5. 그 밖에 산림문화·휴양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산림문화·휴양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4. 공동운영의 법적·행정적 성격

산림자원과장 이용우(4410) 가로수팀장 김미나(4441)

- (법적 성격) 금강수목원 등의 소유권은 충청남도에 있어, 세종시가 시설 운영의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없는 구조임
- 협약서상으로는 “공동운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권한이 공유되는 것이 아니라 운영지원에 해당함
 - 「세종특별자치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산림문화·휴양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지원과,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른 협력을 이행하기 위한 업무협약의 성격임

※ 세종특별자치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제6조(사업) 시장은 산림문화·휴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림문화·휴양 관련 조사 및 연구
2. 산림문화·휴양시설 조성 및 정비
3. 산림문화·휴양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4.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관리
5. 그 밖에 산림문화·휴양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산림문화·휴양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행정적 성격) 금강수목원 등은 충청남도의 소유이나 위치는 세종시 금남면에 위치하고 있어, 지리적 접근성으로 인해 세종시민의 이용 비중이 높은 구조임
- 금강수목원 등은 주 이용이 세종시민이었으며, 재개장 시 '27년도부터 세종시민도 충청남도민과 동일한 조건(무료 입장, 시설이용 30%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 금강수목원은 청양으로 이전하고자 '25년 6월 30일 폐쇄된 이후, 세종 시민들의 재개장 요청이 지속적으로 있었음
- 그간 충청남도가 운영비 전액 부담해 온 반면, 정작 시설을 이용해 온 것은 충청남도 도민보다 세종시민의 비중이 높았던 구조였음
- 이에 충청남도는, 실제 이용 편익을 상당수 누리는 세종시민과 재개장에 대한 대외적인 명분을 확보하고자 공동운영을 제안했던 사항임
- 대외적으로는 공동운영을 통해 금강수목원 등의 국가자산화를 건의할 때 우리 시 입지를 다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국가자산화 건의 시 세종시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이 됨

5. 세종시의 운영비 부담 규모와 산정 근거

산림자원과장 이용우(4410) 가로수팀장 김미나(4441)

- '26년 7월 충청남도는 금강수목원 등의 공동운영을 제안하면서, 연간 약 16억원의 운영비에 대해 세종시 30%, 충청남도 70%의 분담을 요청하였음
- 연간 운영비 16억원은 최근 3년 평균 운영비 25억원 중, 수목원·휴양림·박물관 등 운영에 실제로 소요되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관리비를 토대로 산출한 금액임

<재개장 시 필요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 부 내 역	예 산 액	비 고
합 계		1,800	
재정비 예산(1회)	소계	200	
	리모델링	30	
	시설 이전 및 기반시설 점검 교체	100	
	변경승인 용역비	70	
운영경비(연간)	소계	1,600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00	총 20명
	시설운영 및 공공요금	600	
	소규모 수선비용	200	소모성 시설유지비

< 산림자원연구소 등 총 운영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	2023	2024	3년 평균
합 계	2,123	2,882	2,441	2,482
소 계	1,517	1,615	1,595	1,575.7
인건비(기간제근로자)	764	788	890	814
운영비	548	602	628	592.7
시설관리비	205	225	77	169
시설유지보수비 (수목원·휴양림·박물관)	496	1,105	744	781.7
자산취득비	44	76	43	54.3
민간위탁비	66	86	59	70.3

참고

산림자원연구소 등 총 운영비 세부내용 25억(3년 평균)

(단위 : 백만원)

대상	구분	예산액			내용	비고
		2022	2023	2024		
합계		2,123	2,882	2,441		
시설 관리	소계	451	462	314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24	24	25	▶ 청사 청소 및 위생관리 1명	
	일반운영비	212	203	210	▶ 온실난방, 시설보수, 하수처리 등 ▶ 제설 오수처리약품, 전기시설 관리 등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시설관리	205	225	77	▶ 청사 등 시설물 보수	
	자산취득비	10	10	2	▶ 운반차, 송풍기 등	
수목원	소계	422	720	729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348	350	357	▶ 수목원관리 8명, 무궁화동산 관리 ▶ 숲생태관리인 및 코디네이터 2명	
	운영비	72	77	76	▶ 비품구입 및 계절꽃 식재 등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시설유지보수	-	291	295	▶ 수목원 보완사업 (데크, 안전시설, 안내판 등 시설정비)	
	자산취득비	2	2	1	▶ 전기톱 등 관리장비 구입	
휴양림	소계	721	1,205	1,117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326	330	418	▶ 청소 및 시설정비 등 10명 ▶ 숲생태관리인 1명	
	일반운영비	163	211	239	▶ 소모품, 집기 구입 및 시설관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등
	시설유지보수	200	600	420	▶ 휴양림 보완사업 (숲속의집 리모델링, 공용시설 보수 등)	
	자산취득비	32	64	40	▶ 숲속의집 물품 구입 (TV, 냉장고 등 파손 대체)	
박물관 온실 동물 마을	소계	529	495	281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66	84	90	▶ 청소, 온실관리, 동물관리 등 4명	
	일반운영비	101	111	103	▶ 박물관 소모품 및 시설관리	
	시설유지보수	296	214	29	▶ 박물관 보완사업 (시설정비 및 식재 등)	
	민간위탁	66	86	59	▶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운영	

6. 인력 투입과 조직 운영 계획

산림자원과장 이용우(4410) 가로수팀장 김미나(4441)

- 재개장에 따른 관리인력 확충 과정에서 신규 필요 인력 17명 중 약 30%를 세종시가 투입하기로 협의하였으며, 직렬·직급 및 인원수는 충청남도가 소요 업무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요청하였음
 - (인력 분담) 충남도 13명 / 세종시 4명
 - (인력 구성) 녹지6급(1), 녹지7급(2), 녹지8급(1)
- 파견 시기는 재개장 준비 상황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 충청남도에서는 신속한 재개장 준비를 위해 1명을 우선 파견 요청한 상황이며, 재개장 시점에 맞추워 파견할 계획임
- 조직 구성은 충청남도가 재개장 체계에 맞는 조직(안)을 마련하되, 세종시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산림교육팀(2명)은 세종시 파견인력으로 전담배치하고,
 - 산림휴양팀과 수목원팀에는 각 1명씩 배치하여 세종시가 운영 전반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참고1

재개장 시 조직(안)

< 전면 재개장 시 조직(안) >

부 서	팀 명	소관업무
산림복지과 (30명)	서무팀(8)	· 산림자원연구소 예산, 서무 관련 업무 * 일반직(7), 공무원(1)
	운영지원팀(5) ※ 시설관리팀 명칭변경	· 산림자원연구소 총괄 시설관리 · 세종부지 수목원 및 휴양림 시설조성, 유지관리 · 전기·기계·소방 등 안전관리 용역 * 일반직(4), 공무원(1)
	산림휴양팀(6) ※ 신설	· 휴양시설(숲속의 집, 야영장, 캐빈 등) 운영 * 일반직(2), 청원직(1), 공무원(2) ** 세종시(7급 1)
	수목원팀(9) ※ 신설	· 수목원, 온실, 산림전시관 운영 * 일반직(4), 청원직(1), 공무원(3) ** 세종시(8급 1)
	산림교육팀(2) ※ 신설	· 세종시 연계 산림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기획운영 ** 세종시(6급 1, 7급1)

볼거리는 충남, 즐길거리는 충남, 먹거리는 충남, "충남이면 충분해!"



충 청 남 도



수신 세종특별자치시장(산림자원과장)
(경유)

제목 금강수목원 등 재개장 및 공동운영 관련 사전 협의사항 알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충청남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금강수목원 등의 원활한 재개장과 안정적인 공동운영을 위해 운영인력·운영비 부담, 운영수입 배분 및 재개장 관련 행정절차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습니다.
3. 이에 「금강수목원 등 재개장 및 공동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에 앞서 양 기관이 사전 협의한 공동운영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향후 인력·예산 확보 및 공동운영 업무 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 협의사항

○ 운영인력

- 공동운영에 필요한 인력 중 세종특별자치시는 녹지직 4명* 지원

* 녹지직 4명 【녹지6급 1명, 녹지7급 2명, 녹지8급 1명】

- 금강수목원·자연휴양림 재개장 준비 및 관련 행정절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원인력 4명 중 녹지7급 1명을 2026년 9월 중 우선 파견

○ 운영비

- 2027년부터 세종특별자치시는 금강수목원 등의 공동운영에 필요한 연간 운영비 5억원(정액) 부담

○ 시설비

- 기반시설 정비 및 시설개선 등에 필요한 시설비는 시설 관리주체인 충청남도가 부담

○ 운영수입

- 공동운영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의 인력 및 운영비 부담 등을 고려하여 운영수입의 10%를 세종특별자치시에 배분(배분 방법은 상호 협의하여 처리)

○ 재개장 관련 행정절차

- 충청남도는 재개장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세종특별자치시는 인허가 승인권자로서 관련 행정절차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끝.

7. 운영수입 배분 및 세종시민 편익 분석

산림자원과장 이용우(4410) 가로수팀장 김미나(4441)

- 충청남도의 '24년 전체 수입액은 918백만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한 향후 추정 수입액을 고려할 때
수입액의 10%(91백만원)를 세종시가 배분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음

< 금강자연휴양림 입장객 및 수입액 현황 >

(단위 : 명, 천원)

구 분	2025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이 용 객 수	127,982	238,568	223,796	201,966	166,128	147,504	215,920	189,641	224,989
수 입 액	계	917,837	780,888	753,215	558,378	373,028	545,004	515,889	527,278
	입장료	40,570	109,225	115,294	107,544	105,096	126,678	135,067	90,751
	숲속의 집	301,710	662,356	504,677	478,346	343,681	257,673	238,174	246,717
	주차료 등	53,361	146,256	160,917	167,325	110,534	160,653	142,648	189,810

- 세종시민에게 제공되는 편익은 입장료 무료, 시설이용료
30% 감면으로 충청남도민과 동일한 수준의 산림복지
혜택을 누리게 됨

※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및 야영장 관리 운영 조례 개정('25.7.10)

- 우리시는 자연휴양림이 없어 그동안 시민들이 타 지역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이번 공동운영을 통해 가까운 거리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산림휴양 공간이 마련됨

- 산림휴양시설 이용은 시민들의 건강증진, 정서함양, 심신 회복에 기여하여 삶의 만족도를 높이며, 특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년층의 산림치유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공동운영을 통해 세종 시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세분화하여 반영함으로써, 맞춤형 산림휴양 정책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짐
- 아울러,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 대상의 산림교육(숲해설, 유아숲교육)은 현재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과 도시공원 등 제한된 공간에서만 진행되고 있음
- 중부권에서 최대 규모의 수목원인 금강수목원을 활용할 경우 양질의 맞춤형 산림교육 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해져, 아이들의 숲 교육 기회가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8. 시설관리 및 안전사고 책임 주체

산림자원과장 이용우(4410) 가로수팀장 김미나(4441)

- 「국가배상법」 제5조는 도로·하천 등 공공 영조물의 설치·관리에 하자가 있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설치·관리를 맡은 자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금강수목원 등은 소유권 및 관리 권한이 충청남도에 있는
도유재산이므로, 시설 자체의 관리 및 안전사고의
책임 주체는 1차적으로 충청남도에 있음
- 다만, 우리 시에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는 구조인 만큼,
시설관리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충분한
법률 검토를 거쳐
- 충청남도와의 책임소재에 대해 명확히 정리함으로써,
우리 시에 불필요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9. 세부운영협약과 관련한 의회 협의계획

산림자원과장 이용우(4410) 가로수팀장 김미나(4441)

- 향후 충청남도와의 협의회를 금강수목원 공동운영에 필요한 세부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겠음
 - 운영주체별 역할과 업무범위, 인력 및 운영비 분담, 수입금 처리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세부적으로 검토·조율하겠음
- 또한 세부 운영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요 사항 및 재정적 부담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음
- 이를 바탕으로 금강수목원이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와의 후속 협의를 충실히 진행하고 공동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음

10. 향후 유사 협약 관련 소통 및 협치 강화방안

대외협력담당관 안상천(6210) 의회협력팀장 정미현(6211)

- 이번 사안을 계기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협약 추진 초기 단계부터 관련 절차를 반드시 확인하고
의회와 사전에 소통하는 체계를 강화하겠음
- 협약 총괄부서인 대외협력담당관에서 협약 체결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고 협약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의회 사전의결·
보고 등 필요한 절차를 소관부서에 선제적으로 안내하겠음
 - 또한, 내부결재 시 활용할 사전절차 확인 체크리스트를
마련·제공하여 소관부서에서 협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회 관련 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음
 - 특히 의회 사전의결 대상 협약은 소관부서장 책임하에
의결 필요 여부와 절차 이행 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겠음
- 아울러 협약뿐만 아니라 시의 주요 현안 및 대규모 재정이
수반되는 정책사업에 대해서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회와의 사전 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향후, 주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 결정 이후
형식적으로 보고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계획 수립 및 정책 결정 과정에서부터 의회와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음
- 이러한 소통을 통해 의회의 역할을 존중하고 정책 추진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시와 의회 간 상호 신뢰를 바탕
으로 원활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국가균형성장의 중심
행정수도 세종